



제 554호 2023. 4. 20(목)

입법예고

제2023-1905호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4848
제2023-1911호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34859
제2023-1921호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4862
제2023-1934호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4872

고 시

제2023-108호	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외 오수관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고시	34877
제2023-109호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5차)수립 및 실시계획변경(4차)인가 고시	34879
제2023-110호	김해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34881
제2023-111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34884
제2023-112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34889

공 고

제2023-1867호	공인등록공고	34890
제2023-1928호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34891
제2023-1931호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5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34892

김해시 공고 제2023-1905호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4. 20. ~ 5. 10. (20일간)

3. 개정이유

- 김해시 맛집 평가의 기준,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맛집 평가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함.

4. 주요내용

- 맛집의 지정(안 제4조) : 협회 등의 맛집 추천업소 대상으로 영업자 참여의사 반영 규정 명시, 평가방법 세분화 및 시민참여(이용객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 맛집 지정증 교부 및 재발급에 관한 내용을 다른 조로 이동(안 제4조의2)
-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부칙 제2조) : 맛집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취소에 대한 일부규정 변경
-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자격 정비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958 김해시 분성로 227,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위생정책팀

(전화 : 055-330-0883, 팩스 : 055-722-1577, e메일 : birdhome@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e메일, 직접 방문 등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위생정책팀(☎ 055-330-08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비 고

○ 기타 참고사항 :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김해시 맛집 평가의 기준,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맛집 평가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그 밖에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맛집의 지정(안 제4조)
 - 협회 등의 맛집 추천업소 대상으로 영업자 참여의사 반영규정 명시
 - 평가방법 세분화 및 시민참여(이용객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 맛집 지정증 교부 및 재발급에 관한 내용을 다른 조로 이동(안 제4조의2)
-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안 제5조)
 - 맛집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취소에 대한 일부규정 변경
-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2023. 1. 1.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자격 정비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예산관련 : 해당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해당없음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자체개선안 동의
 - 성별 통계와 관련하여 [별표4] 이용객 호응도 평가표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
- 입법예고 : 2023. 4. 20. ~ 2023. 5. 10.(20일)
- 조례·규칙심의회 : 2023. . . .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3항의 맛집평가 총괄표의 평가점수 합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맛집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업소나 읍·면·동장, 동업자조합 및 관련 단체 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추천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천받은 업소에 맛집 지정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업소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평가점수(심사자가 여럿이면 평균 평가점수를 말한다)를 반영하여 별표 1의 맛집평가 총괄표에 따라 평가한다.

1. 식품위생감시원의 평가(「식품위생법」 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심사 평가표(위생·시설 분야)

2.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 과반수 위원의 평가: 별표 3의 심사 평가표(맛·서비스 등 분야)

3. 심사대상 업소 이용객의 평가: 별표 4의 심사 평가표(이용객 평가)

⑤ 제3항제3호의 이용객 평가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맛집 지정증 교부 등) ①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맛집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맛집의 영업자는 업소명 변경 등으로 맛집 지정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맛집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영업정지”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심의·의결하기”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담당 국·소장”을 “김해시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생·관광업무 담당 과장”을 “김해시보건소 및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업무 담당 과장 각 1명”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맛집평가 총괄표

업 소 명			
대 표 음 식	(가 격 : 원)	(가 격 : 원)	
영 업 신 고 일		영 업 면 적	
영 업 시 간		객 석	입 식 / 좌 식 석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심 사 점 수
검 토 사 항	◦ 신청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업소	해 당 / 비 해 당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주로 식사를 제공하는 업소일 것	해 당 / 비 해 당	
	◦ 기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해 당 / 비 해 당	
검 토 사 항 결 과		적 합 <input type="checkbox"/>	
		부 적 합 <input type="checkbox"/>	
① 위 생· 시 설 분 야	◦ 업소 내 주방, 객석 및 종업원 개인위생 등	30	점
② 맛·서 비 스 등 분 야	◦ 맛, 경제성, 분위기, 서비스 항목	40	점
③ 이 용 객 평 가	◦ 이용객의 평가표에 따른 점수 산정	30	점
합 계 (①+②+③)		100	점
* 가 점	① 10년 이상 동일업종(대표음식동일) 운영 또는 대물림 운영 ②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요리경연대회 수상경력 유무 ③ 「김해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지정된 김해시 농특산물을 대표음식의 주재료로 사용한 경우	각5점 (최대 10점)	점
총 계		110	점

심사자

소 속	성 명	서 명

[별표 2]

심사 평가표(위생·시설 분야)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영 업 장 : m²

구 분		지 정 기 준		배 점	평 가 결 과 ("○"표시)				
대분류	소분류	연번	세 부 항 목	개 별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 우 미 흡
위 생	영 업 장 환 경	영업장 환경 : 전체 점수의 합산 * 2 / 3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10					
		1-1	○창고 벽·천장(조명시설 등), 환기·방충시설 등 청결관리 - 덮개·필터 등 관리 수준, 바닥·선반 등 세척·유지정도	5	5	4	3	2	1
		1-2	○객석, 조리장 등 영업장 내·외부 관리 상태 시설(식탁, 의자) 정리도,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 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여부	5	5	4	3	2	1
		1-3	○창고 등 원료보관실 - 적절한 포장라벨, 정리정돈상태, 입·출고 선입 선출관리 등	5	5	4	3	2	1
	주 방 위 생 환 경	주방 위생환경 : 전체 점수의 합산 / 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10					
		2-1	○음식물 쓰레기·잔반통의 위생적 취급 - 뚜껑 개폐 여부, 내·외부 청결도	5	5	4	3	2	1
		2-2	○교차오염 방지 - 날음식(또는 생선·육류 등) 하단, 익힌 음식(또는 채소·가공품) 상단 보관 - 조리식의 원재료 분리보관 및 조리기구 용도별 사용	5	5	4	3	2	1
		2-3	○바닥 내수처리 및 세척, 배수시설 청결도	5	5	4	3	2	1
		2-4	○냉장·냉동고 청소 및 온도 관리 상태(정기·수시)	5	5	4	3	2	1

구분		지정 기준		배점	평가 결과 ("○"표시)				
대분류	소분류	연번	세부항목	개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개인위생	개인위생 : 전체 점수의 합산 / 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5					
		3-1	○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위생마스크 등 착용 여부 및 청결도	5	5	4	3	2	1
		3-2	○ 장신구 착용, 화장·손톱 상태, 금연, 취식 여부 등 개인위생관리수칙 인지 및 준수도	5	5	4	3	2	1
	화장실	화장실 : 전체 점수의 합산 / 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5					
		4-1	○ 오수·악취 없도록 세척·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5	5	4	3	2	1
		4-2	○ 세척제, 에어타월 또는 위생종이 구비, 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5	5	4	3	2	1
합 계				30					

기타 의견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성명	서명

[별표 3]

심사 평가표(맛·서비스 등 분야)

평가일자		대표메뉴	
업 소 명		대 표 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심사결과			최종 점수
			우수	보통	미흡	
1. 맛		20				
	①향, 식감, 간 등의 대표음식의 맛	9	9	6	3	
	②제공된 상차림 구성 적정성 - 담겨있는 상태, 윤기, 그릇과의 조화 등	5	5	3	1	
	③지역특산물, 신선한 재료 등 식재료 활용의 숙련도	3	3	2	1	
	④대표음식의 창의성 및 특이성	3	3	2	1	
2. 경 제 성		5				
	①음식의 맛 대비 가격의 적정성	3	3	2	1	
	②주메뉴 및 반찬류 가짓수, 양의 적절성	2	2	1	0	
3. 분 위 기		5				
	①조명, 온도, 소음, 환기 등 쾌적한 실내 분위기	3	3	2	1	
	②음식과 업소 내·외관, 간판 등의 조화	2	2	1	0	
4. 서 비 스		10				
	①방문고객 맞이부터 배웅까지 서비스 표준화 정도 - 맞이, 안내 및 (추가)주문, 서빙, 결제, 배웅 등 응대	4	4	3	2	
	②고객 불만(요청)사항 등 조치법	3	3	2	1	
	③식당규모 대비 주차시설 확보 및 예약시스템 운영	3	3	2	1	
합 계		40	40	26	12	점

심사의견 -메뉴구성, 맛 등 -맛집 적합조건 등	
---	--

심사자

소 속	성 명	서 명

[별표 4]

심사 평가표(이용객 평가)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에서는 년 맛집 신청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객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신 업소에 대해 평가해 주시면 김해시 맛집 지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객관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대상업소

이용일자		업 소 명	
소재지		메 뉴	

설문항목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점수				
		맛	10	10	8	6	4
	가격	10	10	8	6	4	2
	서비스, 청결, 분위기	10	10	8	6	4	2
	합 계	30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점인가?			적합		부적합		

응답자 인적사항

성 별	나 이	거주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맛집의 지정)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나 동업자조합, 관련단체 등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맛집 지정 추천서를 제출하여 추천한 영업소는 맛집 지정 신청업소로 본다.</p> <p>③ 시장은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별표의 맛집 심사표 작성을 위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한다.</p> <p>⑤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맛집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⑥ 맛집의 영업자는 업소명 변경 등으로 맛집 지정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맛집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맛집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맛집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업소나 읍·면·동장, 동업자조합 및 관련 단체 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맛집 지정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추천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추천받은 업소에 맛집 지정의 의사를 확인하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의 업소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평가점수(심사자가 여럿이면 평균 평가점수를 말한다)를 반영하여 별표 1의 맛집평가 총괄표에 따라 평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감시원의 평가(「식품위생법」 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심사 평가표(위생·시설 분야) 2.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 과반수 위원의 평가: 별표 3의 심사 평가표(맛 분야) 3. 심사대상 업소 이용객의 평가: 별표 4의 이용객 평가표 <p>④ ---- 제3항의 맛집평가 총괄표의 평가점수 합계----- ----- -----.</p> <p>⑤ 제3항제3호의 이용객 평가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p> <p><삭 제></p>

<신 설>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2. ~ 5. (생략)

③·④ (생략)

제7조(맛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맛집의 지정·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맛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위생·관광업무 담당 과장
2. (생략)

제4조의2(맛집 지정증 교부 등) ①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맛집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맛집의 영업자는 업소명 변경 등으로 맛집 지정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맛집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맛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심의·의결하기 -----
-----.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김해시보건소장 -----

-----.

1. ----- 김해시보건소 및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업무 담당 과장 각 1명
2. (현행과 같음)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2. 폐지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 8. 14.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음.
- 조례 제정 당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 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이 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 기반시설부담금은 주변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며 각종 부담금 등 조세 이외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8. 3. 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고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의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4. 의견 제출

가. 이 폐지조례안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참조:도시계획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50924)/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 2)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도시정비팀)
- (전화 : 055-330-4845, FAX:055-722-4730, E-Mail : bouk122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폐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김해시장

1. 제안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3.28. 폐지됨에 따라 이 법률에 근거를 둔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 예산관련: 해당없음
- 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해당없음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해당없음
- 입법예고: 2023. 4. 20. ~ 2023. 5. 10.
- 조례·규칙심의회: 2023. 5. .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 등의 승계)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김해시 공고 제2023-1921호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개정이유

- 당직휴무 사용기한 연장 및 재택근무를 포함한 당직근무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과 일반·긴급사태 시 임무를 보완하고, 비상근무인력 편성 시 필수근무대상을 지정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책임감 있는 업무전파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문 변경(안 제1조)
- '재택당직' 정의 신설, 당직수당 지급규정 개선(안 제3조, 제5조)
- 당직근무자의 휴무방법 개선(안 제6조)
- 재택당직편성의 일·숙직 전환, 당직제외대상 신설(안 제7조)
- 당직근무명령 변경방법 개선(안 제8조)
- 일직 교대근무 신설(안 제10조)
- 당직근무의 위치,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준수사항 보완(안 제11조~제15조)
- 비상근무인력 편성 시 비상근무종류(제1~3호)에 따른 필수근무대상 명시(안 제23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 2) 담당부서 : 총무과(총무팀)
(전화:055-330-3077, FAX:055-722-168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총무과 총무팀(☎055-330-30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 자치법규명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제안이유

- 당직휴무 사용기한 연장 및 재택근무를 포함한 당직근무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과 일반·긴급사태 시 임무를 보완하고, 비상근무인력 편성 시 필수근무대상을 지정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책임감 있는 업무전파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문 변경(안 제1조)
- ‘재택당직’ 정의 신설, 당직수당 지급규정 개선(안 제3조, 제5조)
- 당직근무자의 휴무방법 개선(안 제6조)
- 재택당직편성의 일·속직 전환, 당직제외대상 신설(안 제7조)
- 당직근무명령 변경방법 개선(안 제8조)
- 일직 교대근무 신설(안 제10조)
- 당직근무의 위치,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준수사항 보완(안 제11조~제15조)
- 비상근무인력 편성 시 비상근무종류(제1~3호)에 따른 필수근무대상 명시(안 제2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 예산관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 입법예고 : 2023. 4. . ~ 2023. 5. .(20일 이상)
- 조례·규칙심의회 : 2023. 5. .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를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로,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 근무”를 “외의 당직근무”로 한다.

제3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근무 종료일에 휴무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고, 당직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을 때는 원래의 휴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당직명령자는 재택당직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택당직에서 일·숙직 근무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풍수해, 설해, 산불 등의 재해
2. 긴급조치로 행정 지원이 필요

⑨ 임신부, 장애인, 미취학아동의 양육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자체에서 동일 직급의”를 “내에서”로, “정하여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를 “정하여”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 근무할 수 있다.

1. 일직 시

가. 전반 근무시간 : 13:00부터 14:00까지

나. 후반 근무시간 : 14:00부터 15:00까지

2. 숙직 시

가. 전반 근무시간 : 23:00부터 03:00까지

나. 후반 근무시간 : 03:00부터 07:00까지

제11조(당직근무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교대근무에 따른 휴식은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음주”를 “당직업무수행 외에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음주”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든 사고를 방지”를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화민원의 응대

6.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당직보완 장비의 작동상태 확인

7. 각 사무실에 비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 기록 사항 확인(무인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구역의 보안점검표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무기고 등 중요시설”을 “중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상남도청 당직실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지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23조제4항 전단 중 “비상근무 인력이”를 “비상근무인원이”로, “비상근무 인력을”을 “비상근무인원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별표 2에 따라 가급적 필수근무대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사용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당직근무에 대하여 휴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당직근무자 편성(제7조 관련)

소속행정기관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비고
본청	1. 일직 가. 당직사령(5·6급) : 1명 나. 당직반장(6·7급) : 1명 다. 당직반원 : 5명(재난근무2명) 2. 숙직 가. 당직사령(5·6급) : 1명 나. 당직반장(6·7급) : 1명 다. 당직반원 : 5명(재난근무2명)	
직속기관	1. 농업기술센터 가. 일직 : 2명 나. 숙직 : 2명 3. 김해시서부보건소 가. 일직 : 1명 나. 숙직 : 1명 2. 김해시보건소 가. 일직 : 2명 나. 숙직 : 2명	
사업소	1. 도서관 - 칠암도서관 가. 일직 : 2명 나. 숙직 : 1명 - 화정글샘도서관 가. 일직 : 2명 나. 숙직 : 1명 - 진영한빛도서관 가. 일직 : 2명 나. 숙직 : 1명 - 장유도서관 가. 일직 : 3명 나. 숙직 : 1명 - 기적의 도서관 가. 일직 : 1명 - 율하도서관 가. 일직 : 1명 나. 숙직 : 1명 2. 차량등록사업소 가. 일직 : 1명 나. 숙직 : 1명 3. 박물관 - 수도박물관 가. 일직 : 2명 - 대성동고분박물관 가. 일직 : 3명 나. 숙직 : 1명 - 율하·관동유적공원 가. 일직 : 2명 - 진영역철도박물관 가. 일직 : 2명 - 김해분청도자박물관 가. 일직 : 1명 - 김해한글박물관 가. 일직 : 2명 4. 사적지 - 수로왕릉 가. 일직 : 3명 나. 숙직 : 1명 - 왕비릉 가. 일직 : 1명 나. 숙직 : 1명 - 봉황대유적지 가. 일직 : 1명 나. 숙직 : 1명	
출장소	1. 일직 : 2명 2. 숙직 : 2명	
읍면동	1. 일직 : 1명 2. 숙직 : 1명	

별표2

비상근무종류 및 근무대상(제23조제4항 관련)

종 류	근 무 인 원	필 수 근 무 대 상
제1호	현원의 1/3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팀장 및 5급 이상 간부 ○ 각 과 보안업무담당자 ○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 정보화 업무 담당자
제2호	현원의 1/5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실·국장 및 과장 ○ 각 과 주무팀장 ○ 각 과 보안업무담당자 ○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 정보화 업무 담당자
제3호	현원의 1/1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업무담당 실·국장 및 과장 ○ 각 과 주무팀장 ○ 각 과 보안업무담당자 ○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 정보화 업무 담당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 제9조에 따라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u>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5조(당직수당) <u>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u></p> <p>1. <u>일직 및 숙직 : 60,000원</u></p> <p>2. <u>재택당직자 : 30,000원(재택당직수당은 연장근무 시간이 연속해서 3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가 근무명령을 받아 사무실 등에서 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며, 무인전자장비의 출·퇴근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u></p> <p>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u>숙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u></p> <p>② <u>일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일직 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u></p> <p>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u>당직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 제6조----- ----- ----- ----- ----- ----- -----.</p> <p>제3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5조(당직수당) <u>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6조(당직근무자의 휴무) <u>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근무 종료일에 휴무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고, 당직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을 때는 원래의 휴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u></p> <p>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u><삭 제></u></p>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 및 당직상황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신설>

<신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생략)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 자체에서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당직명령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동시에 전원이 근무한다. 다만, 숙직 시에는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으며, 전반 근무시간은 23:00부터 다음날 03:00까지 후반 근무시간은 03:00부터 07:00까지로 한다.

제11조(당직근무의 위치) ① 삭제

② 당직근무자는 공무 외에는 근무구역인 청사(재택당직근무자는 자택)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 별표 1과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당직명령자는 재택당직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택당직에서 일·숙직 근무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 1. 풍수해, 설해, 산불 등의 재해
2. 긴급조치로 행정 지원이 필요

⑨ 임신부, 장애인, 미취학아동의 양육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내에서 -----
----- 정하여 -----
-----.

제10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 근무할 수 있다.

- 1. 일직 시
가. 전반 근무시간 : 13:00부터 14:00까지
나. 후반 근무시간 : 14:00부터 15:00까지
2. 숙직 시
가. 전반 근무시간 : 23:00부터 03:00까지
나. 후반 근무시간 : 03:00부터 07:00까지

제11조(당직근무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교대근무에 따른 휴식은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
-- 당직업무수행 외에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음주-----
---- 안 -----.

② -----
----- . <단서 삭제>

제14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

1.·2. (생략)

<신설>

3.·4. (생략)

<신설>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 및 최종퇴청자 기록부 점검

<신설>

② (생략)

제15조(당직근무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생략)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생략)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도청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전화민원의 응대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6.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당직보완 장비의 작동상태 확인

<삭제>

7. 각 사무실에 비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 기록 사항 확인(무인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구역의 보안점검표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당직근무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중요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상남도청 당직실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지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비상근무인원이 -----
----- 비상근무인원을 ----- .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별표 2에 따라 가급적 필수근무대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⑤ (현행과 같음)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4. 20. ~ 5. 10.(20일간)

3. 개정필요성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책 읽는 도시, 김해’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현행 시립도서관 목록(명칭 및 위치) 정비 및 직제 순 정렬(안 제2조)
 - 김해올하도서관 추가(2018. 6. 1. 개관)
- 시립도서관 별 휴관일 지정 운영을 통해 시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안 제5조)

도서관명	정기휴관일	
	당초	개정안
장유도서관	매일 마지막 주 월요일	매월 두 번째 월요일
김해기적의도서관		매월 세 번째 월요일
김해올하도서관		매월 네 번째 월요일
칠암도서관		매월 마지막 월요일
화정글샘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인재육성지원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김해시청
- 2) 담당부서 : 인재육성지원과(책읽는도시팀)
(전화:055-330-6683, FAX:055-722-104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인재육성지원과 책읽는도시팀 (055-330-668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개정안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년 월 일

제출자 : 김해시장

1. 개정 필요성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책 읽는 도시, 김해’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시립도서관 목록(명칭 및 위치) 정비 및 직제 순 정렬(안 제2조)
 - 김해올하도서관 추가(2018. 6. 1. 개관)
- 시립도서관 별 휴관일 지정 운영을 통해 시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안 제5조)

도서관명	정기휴관일	
	당초	개정안
장유도서관	매일 마지막 주 월요일	매월 두 번째 월요일
김해기적의도서관		매월 세 번째 월요일
김해올하도서관		매월 네 번째 월요일
칠암도서관		매월 마지막 월요일
화정글샘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 예산관련 : 해당없음
- 관련 부서협의(부패영향,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 : 2023. 4.
- 법제심사 의뢰 : 2023. 4.
- 입법예고 : 2023. 4. 20. ~ 5. 10.(20일 이상)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23. 5.
- 시의회 제출 및 의결 : 2023. 6.
- 개정안 공포 : 2023. 7.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김해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칭	소재지
장유도서관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7(대청동)
김해기적의도서관	김해시 율하1로 55(율하동)
김해율하도서관	김해시 율하2로 210(율하동)
칠암도서관	김해시 활천로285번길 14(삼방동)
화정글샘도서관	김해시 삼계중앙로13번길 19(삼계동)
진영한빛도서관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40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휴관일

가. 장유도서관 : 매월 두 번째 월요일

나. 김해기적의도서관 : 매월 세 번째 월요일

다. 김해율하도서관 : 매월 네 번째 월요일

라. 칠암도서관 · 화정글샘도서관 · 진영한빛도서관 : 매월 마지막 월요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명칭 및 위치) 김해시 시립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5%;">명칭</th> <th style="width: 75%;">소재지</th> </tr> </thead> <tbody> <tr> <td>칠암도서관</td> <td>김해시 활천로285번길 14(삼방동)</td> </tr> <tr> <td>장유도서관</td> <td>김해시 대청로176번길 7(대청동)</td> </tr> <tr> <td>화정글샘도서관</td> <td>김해시 삼계중앙로13번길 19(삼계동)</td> </tr> <tr> <td>진영한빛도서관</td> <td>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40</td> </tr> <tr> <td>김해기적의도서관</td> <td>김해시 율하1로 55(율하동)</td> </tr> </tbody> </table>	명칭	소재지	칠암도서관	김해시 활천로285번길 14(삼방동)	장유도서관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7(대청동)	화정글샘도서관	김해시 삼계중앙로13번길 19(삼계동)	진영한빛도서관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40	김해기적의도서관	김해시 율하1로 55(율하동)	<p>제2조(명칭 및 위치)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5%;">명칭</th> <th style="width: 75%;">소재지</th> </tr> </thead> <tbody> <tr> <td>장유도서관</td> <td>김해시 대청로176번길 7(대청동)</td> </tr> <tr> <td>김해기적의도서관</td> <td>김해시 율하1로 55(율하동)</td> </tr> <tr> <td>김해율하도서관</td> <td>김해시 율하2로 210(율하동)</td> </tr> <tr> <td>칠암도서관</td> <td>김해시 활천로285번길 14(삼방동)</td> </tr> <tr> <td>화정글샘도서관</td> <td>김해시 삼계중앙로13번길 19(삼계동)</td> </tr> <tr> <td>진영한빛도서관</td> <td>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40</td> </tr> </tbody> </table>	명칭	소재지	장유도서관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7(대청동)	김해기적의도서관	김해시 율하1로 55(율하동)	김해율하도서관	김해시 율하2로 210(율하동)	칠암도서관	김해시 활천로285번길 14(삼방동)	화정글샘도서관	김해시 삼계중앙로13번길 19(삼계동)	진영한빛도서관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40
명칭	소재지																										
칠암도서관	김해시 활천로285번길 14(삼방동)																										
장유도서관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7(대청동)																										
화정글샘도서관	김해시 삼계중앙로13번길 19(삼계동)																										
진영한빛도서관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40																										
김해기적의도서관	김해시 율하1로 55(율하동)																										
명칭	소재지																										
장유도서관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7(대청동)																										
김해기적의도서관	김해시 율하1로 55(율하동)																										
김해율하도서관	김해시 율하2로 210(율하동)																										
칠암도서관	김해시 활천로285번길 14(삼방동)																										
화정글샘도서관	김해시 삼계중앙로13번길 19(삼계동)																										
진영한빛도서관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40																										
<p>제5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매월 마지막주 월요일</u></p> <p>2. (생략)</p> <p>3. (생략)</p>	<p>제5조(휴관일) ① ----- -----.</p> <p>1. 정기휴관일 <u>가. 장유도서관 : 매월 두 번째 월요일</u> <u>나. 김해기적의도서관 : 매월 세 번째 월요일</u> <u>다. 김해율하도서관 : 매월 네 번째 월요일</u> <u>라. 칠암도서관·화정글샘도서관·진영한빛도서관 : 매월 마지막 월요일</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외 오수관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고시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4. 20.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사업 목적

진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절하게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 가. 위 치 : 진례면 송정리 일원
- 나. 면 적 : A=3,360㎡

4. 시설의 종류 · 명칭 및 용량

- 가. 종 류 : 공공하수도
- 나. 명 칭 : 안동지구 오수관로
- 다. 용 량 : 공공하수관 설치 D=500m, L=960m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가. 예정하수처리구역 : 진례처리구역 송정처리분구

6.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여부

지구 내 오수관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포함, 지구 외 오수관로는 미포함

7. 사업시행 기간

- 가. 착공예정일 : 2023. 4. 20.
- 나. 준공예정일 : 2024. 5. 31.

8.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연번	소재지 (김해시)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주소	성명	
1	진례면 송정리	175-1	도로	2,150.0	2.00		경상남도				
2	진례면 송정리	177-6	도로	1,090.0	10.00		경상남도				
3	진례면 송정리	177-4	도로	3,342.0	54.00		경상남도				
4	진례면 송정리	1186-3	구	3,578.0	7.00		국				
5	진례면 송정리	199-1	답	14.0	2.00		경상남도				
6	진례면 송정리	197-3	도로	4,194.0	83.00		경상남도				
7	진례면 송정리	196-7	도로	869.0	18.00		경상남도				
8	진례면 송정리	1178-12	도로	260.0	1.00		국				
9	진례면 송정리	268-4	답	69.0	1.00		경상남도				
10	진례면 송정리	268-2	도로	496.0	5.00	김해군 진례면 송정리 ***	김**				
11	진례면 송정리	332	도로	499.0	50.00		국				
12	진례면 송정리	330-8	답	948.0	5.00		김해시				
13	진례면 송정리	324	도로	440.0	44.00		국				
14	진례면 송정리	325-10	답	893.0	6.00		김해시				
15	진례면 송정리	310	도로	1,983.0	30.00		국				
16	진례면 송정리	274-12	대	167.0	2.00		김해시				
17	진례면 송정리	274-11	답	671.0	20.00		김해시				
18	진례면 송정리	271	도로	436.0	6.00		국				
19	진례면 송정리	272-5	답	876.0	45.00		김해시				
20	진례면 송정리	334-14	구	830.0	3.00		국				
21	진례면 송정리	23-1	도로	1,386.0	4.00		국				
22	진례면 송정리	19-13	잡	67.0	3.00		김해시				
23	진례면 송정리	19-22	잡	120.0	5.00		김해시				
24	진례면 송정리	19-14	답	2,777.0	62.00		김해시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5차)수립 및 실시계획변경(4차)인가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21-293호(2021. 08. 13.)로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0일

김 해 시 장

I. 개발계획(변경)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신문1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374번지 일원
- 면 적 : 619,953m²

3. 도시개발사업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사업대상지의 지리적 여건(김해관광유통단지, 장유 신문지구,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울하 신도시 등)을 고려하면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급속한 도시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새로운 택지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래 수용인구에 대비한 택지의 공급과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장래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지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기여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조기 확보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지 증진이 이바지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374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 일까지(2021.08.13. ~ 2025.08.12.)
-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관한 토지 명세(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인가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김해시 도시개발과 (☎ : 055-330-361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 외 변경없음)

II.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4. 시행자(변경없음)

5.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해당사업의 환지처분 일까지(2021.8.13. ~ 2025.8.12.)

6. 시행방식(변경없음)

○ 사업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부분에 한함)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A17-1	34,846	신문동 437-8번지 일원	34,846	-	34,846	기정	공동주택용지 (분양 및 임대)
						변경	공동주택용지 (분양)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인가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김해시청(도시개발과)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III. 관련도면 : 해당없음

김해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김해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김 해 시 장

김해시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

1. 야생생물보호구역 변경내역

보호구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당초	변경	
대청 야생생물보호구역	대청동	산64-3	임야	0	12,397	지정
		산64-1	임야	2,012,409	2,006,339	면적변동
초정 야생생물보호구역	대동면 초정리	산6	임야	1,388	0	해제

2. 야생생물보호구역 최종 내역

보호구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존속기한
계				7,799,388	
초정 야생생물보호구역	대동면 초정리	산3, 산4, 산5, 산7-1	임야	93,109	'08.11.24.~ 해제 시 (대청동 산64-3)
삼방 야생생물보호구역	삼방동	산120-2	임야	120,991	
여차 야생생물보호구역	상동면 여차리	산157	임야	5,245,491	
대청 야생생물보호구역	대청동	산64-1, 산64-3, 산68-4	임야	2,235,566	'23.4.20.~ 해제 시)
내룡 야생생물보호구역	진영읍 내룡리	산79, 산81, 산84, 산85	임야	104,231	

3. 제한사항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보호구역 안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등의 행위를 하거나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4. 기타

- 야생생물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도면은 환경정책과에 비치하였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055-330-2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명 칭	초정 야생생물보호구역																										
구 역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산3, 산4, 산5, 산7-1번지																										
존속기간	2008. 11. 24. ~ 해제 시 까지																										
구역의 지목별 면적과 수면의 면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소 재 지</th> <th style="width: 10%;">지 번</th> <th style="width: 15%;">지 목</th> <th style="width: 50%;">지정 면적</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td> <td>93,109㎡</td> </tr> <tr> <td>김해시 대동면 초정리</td> <td>산3</td> <td>임야</td> <td>3,894㎡</td> </tr> <tr> <td>김해시 대동면 초정리</td> <td>산4</td> <td>임야</td> <td>81,876㎡</td> </tr> <tr> <td>김해시 대동면 초정리</td> <td>산5</td> <td>임야</td> <td>1,785㎡</td> </tr> <tr> <td>김해시 대동면 초정리</td> <td>산7-1</td> <td>임야</td> <td>5,554㎡</td> </tr> </tbody> </table>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정 면적	계	-	-	93,109㎡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산3	임야	3,894㎡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산4	임야	81,876㎡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산5	임야	1,785㎡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산7-1	임야	5,554㎡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정 면적																								
계	-	-	93,109㎡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산3	임야	3,894㎡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산4	임야	81,876㎡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산5	임야	1,785㎡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산7-1	임야	5,554㎡																								
야생생물의 종류와 최근 3년간의 서식변동상황	멧토끼, 꿩, 멧비둘기																										
주위환경	보호구역은 산 아래부터 정상부위 까지 해당하고 하부는 주거지, 초등학교와 접해있음																										
야생생물 보호·번식방법	보호단속을 통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번식																										
설정 및 유지에 드는 경비의 명세와 부담방법	야생생물보호구역 안내판 및 경계표주 설치																										
관리방법	자연상태보전 및 야생생물 밀렵단속 강화																										
설정사유	야생생물의 보호·번식과 서식환경 유지 및 도시주변 생활환경 개선																										
도 면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명 칭	대청 야생생물보호구역		
구 역	김해시 대청동 산64-1, 산64-3, 산68-4		
존속기간	2008. 11. 24. ~ 해제 시 까지 (대청동 산64-3: 2023. 4. 20. ~ 해제 시 까지)		
구역의 지목별 면적과 수면의 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계	-	임야
	김해시 대청동	산64-1	임야
	김해시 대청동	산64-3	임야
	김해시 대청동	산68-4	임야
야생생물의 종류와 최근 3년간의 서식변동상황	삵, 소쩍새, 쇠딱따구리, 노랑턱멧새, 너구리		
주위환경	보호구역이 산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유사와 접하고 있으며 동물서식환경이 양호함		
야생생물 보호·번식방법	보호단속을 통하여 야생생물의 보호번식		
설정 및 유지에 드는 경비의 명세와 부담방법	야생생물보호구역 안내판 및 경계표주 설치		
관리방법	자연상태보전 및 야생생물 밀렵단속 강화		
설정사유	야생생물의 보호·번식과 서식환경 유지 및 도시주변 생활환경 개선		
도 면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8-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7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봉하로 인도 확장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시설명	도시계획 결정		금회 시행규모				최초결정일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면적(m ²)		
					당초	변경	
중로 3-37호선	603	13	603	13	8,888	7,282	2020.9.2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 명 : 김해시장(도로과장)
 -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5. 사업기간(변경)
 - 당초 : 실시계획 고시일 ~ 2022. 12. 31.
 - 변경 : 실시계획 고시일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 : 불임
7. 실시계획 신청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조정 및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6)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기정	진영읍 본산리	8-27	제	1,807	1,404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	8-473	제	1,404	1,404	한국농어촌공사					
기정	"	75-2	구	3,120	557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	75-19	구	214	214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	75-21	구	316	316	한국농어촌공사					
기정	"	75-3	제	929	797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없음
기정	"	75-5	도	40	40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없음
기정	"	8-9	제	691	635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	8-9	제	45	17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	8-472	제	635	635	한국농어촌공사					
기정	"	8-116	전	1,019	155	황**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8-475	전	155	155	김해시					
기정	"	98-7	전	85	85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없음
기정	"	8-26	제	218	218	황**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8-26	제	218	218	김해시					
기정	"	8-342	도	2	2	황**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8-342	도	2	2	김해시					
기정	"	74-7	제	13	13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없음
기정	"	74-17	도	130	130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98-10	도	20	20	정**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98-10	도	20	20	김해시					
기정	"	74-13	전	739	159	조**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74-27	전	159	159	김해시					
기정	"	74-18	도	71	71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74-16	전	438	40	최**	김해시 진영읍 **로				
변경	"	74-28	전	27	27	김해시					
변경	"	74-29	전	13	13	김해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기정	진영읍 본산리	74-23	전	17	17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98-9	전	53	53	정**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98-9	전	53	53	김해시					
기정	"	74-19	도	31	31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74-12	전	171	40	최**	김해시 진영읍 **로				
변경	"	74-26	전	40	40	김해시					
기정	"	74-20	도	99	99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74-11	전	711	198	황**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74-25	전	198	198	김해시					
기정	"	6-5	구	47,536	51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	6-326	구	51	51	한국농어촌공사					
기정	"	74-21	도	72	72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74-9	전	335	183	최**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74-24	전	183	183	김해시					
기정	"	74-2	도	2	2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74-22	전	1	1	최**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74-22	전	1	1	김해시					
기정	"	8-343	도	24	24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8-297	전	102	70	최**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8-478	전	70	70	김해시					
기정	"	8-344	도	63	63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8-284	전	1,789	253	최**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8-476	전	231	231	김해시					
기정	"	8-466	전	826	75	민**	김해시 진영읍 **로				
변경	"	8-477	전	22	22	김해시					
변경	"	8-480	전	64	64	김해시					
기정	"	8-356	도	29	29	김해시					변경 없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기정	진영읍 본산리	94-5	제	69	30	노**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94-18	제	30	30	김해시					
기정	"	8-301	전	145	3	노**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8-479	전	1	1	김해시					
기정	"	92-2	구	92	92	이**	김해시 진영읍 ***				
변경	"	92-2	구	92	92	김해시					
기정	"	92-5	도	15	15	봉***회	김해시 진영읍 **로				
변경	"	92-5	도	15	15	김해시					
기정	"	92-6	대	14	5	이**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92-8	대	5	5	김해시					
기정	"	92-7	대	944	16	재단법인***** ****	서울 마포구 **로				
변경	"	92-9	대	16	16	김해시					
기정	"	1533	구	750	61	국토교통부					
변경	"	1533-2	구	61	61	국토교통부					
기정	"	41-8	대	43	4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	41-11	대	4	4	한국농어촌공사					
기정	"	41-1	구	324	315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	41-9	구	315	315	한국농어촌공사					
기정	"	40-8	제	2	1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	40-10	제	1	1	한국농어촌공사					
기정	"	8-6	제	2,342	1,960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	8-467	제	390	390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	8-469	제	42	42	한국농어촌공사					
기정	"	8-7	구	944	365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	8-470	구	181	181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	8-471	구	184	184	한국농어촌공사					
기정	"	40-9	대	850	9	김해시					
변경	"	40-11	대	9	9	김해시					
기정	"	1269	구	327	47	국토교통부					
변경	"	1269-1	구	47	47	국토교통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기정	진영읍 본산리	34	전	106	4	조**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34-1	전	6	6	김해시					
기정	"	31-10	도	19	19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31-11	도	18	18	하**	김해시 진영읍 **리				
변경	"	31-11	도	18	18	김해시					
기정	"	31-5	도	54	54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28-2	도	118	118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28-9	도	4	4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28-10	도	11	11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28-11	도	12	12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29-5	도	58	57	김해시					금회 외
변경	"	29-5	도	1	-	김해시					
기정	"	27-1	계	1	1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없음
기정	"	27-2	도	4	3	김해시					
변경	"	27-9	도	3	3	김해시					
기정	"	27-7	도	3	1	김해시					
변경	"	27-10	도	1	1	김해시					
기정	"	8-346	도	49	49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8-347	도	11	11	김해시					변경 없음
기정	"	32-5	도	16	16	김해시					변경 없음
합계		당초(61필지)		68,548	8,888						
		변경(66필지)		7,443	7,282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504-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소로1-133,소로2-385호선,공공공지)사업
 - 사업의 명칭 : 대청천 경동리인 뷰 아파트 주변도로 정비 및 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길이(m)	폭원(m)	면적(㎡)	
중로2-1	935	15~19	132	3	359	1977.11.09
소로1-133	276	10	276	10	2,774	김해시고시 제2017-169호 (2017.6.23)
소로2-385	128	8	128	8	1,085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공공공지	1,189	1,189	김해시고시 제2020-300호 (2020.10.2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지정 : (주)케이피이 대표자 김재진
 - 변경 : (주)케이피이 대표자 김정기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 (연산동)
5. 사업기간 : 2018. 6. 8. ~ 2023. 9.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변경없음
7.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T.055-330-3594)에 비치】

공 고

김해시 공인조례 제6조(등록) 및 제10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신조 등록하는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김 해 시



1. 공인 등록일자 : 2023. 04. 17.

2. 신조 등록 공인내역 : 1개

공 인 명	규격 (cm)	재료	서 체	등 록 사유	관리부서
김 해 시 고 향 사 랑 기 금 출 납 원 인	1.8×1.8	흑인조	훈 민 정음체	김해시 고향사랑기금 운용	세 정 과

3. 신조 등록 인영부 : 1개

구 분	공 인 명	규격 (cm)	재료	서체	인 영
신 조	김 해 시 고 향 사 랑 기 금 출 납 원 인	1.8×1.8	흑인조	훈 민 정음체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공고 기간 이내에 김해시(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 04. 20.

김 해 시 장

1. 위 치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산9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김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 명 칭 : 롯데스카이힐 김해CC 내 주차장 확장 및 개선공사
3.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시설결정(㎡)	금회시행규모(㎡)	비고
체육시설 (골프장)	1,029,916.1	7,268	1998.3.1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호텔롯데 스카이힐 김해CC 대표이사 이완신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134번길 54-49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 류 및내용	
1	진례면 송현리	산91-1	임	95,562	7,268	산림청	-				

7. 실시계획인가 신청사유
 - 주차장 확장 및 주차 구획 개선을 통하여 이용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
8.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T.055-330-3594)에 비치】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5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5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같은 법」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공고 기간 이내에 김해시 (도시계획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20.

김 해 시 장

1. 위 치 : 김해시 대청동 79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김해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52호선)사업
 - 명 칭 : 국립옹지봉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결정			금회 시행규모			비고
	길이(m)	폭원(m)	면적(㎡)	길이(m)	폭원(m)	면적(㎡)	
소로 1-152	150	10	1,555	34	10	948	김해시 고시 제2020-243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도로과장)
 - 주 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5. 사업시행기간
 - 기 정 : 2020.12.30. ~ 2022. 12. 29.
 - 변 경 : 2020.12.30. ~ 2024. 12. 29.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7. 실시계획(변경) 신청사유 : 편입부지(국유지) 보상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8.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T.055-330-3594)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소로1-15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종 류 및내용	
1	대청동	793-1	도	160	27	김해시	김해시				
2	“	산112-13	도	527	17	김해시	김해시				
3	“	795	천	152	43	경상남도	경상남도				
4	“	1130	천	74,026	399	국	국토교통부				
5	“	529-11	답	65	65	김해시	김해시				
6	“	528	답	169	169	김해시	김해시				
7	“	1172-1	도	16	16	국	기획재정부				
8	“	1172-2	도	8	8	국	기획재정부				
9	“	1172-3	도	85	85	국	기획재정부				
10	“	529-12	도	104	104	국	기획재정부				
11	“	529-10	임	15	15	김해시	김해시				